

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조계원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“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다”는 사항을 명시하려는 내용임(안 제5조제1항 신설).

II. 검토의견

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화 실)